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53228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6. 4. 22.

판결 선고2016. 5.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58,328원과 그 중 1,000,389,428원에 대하여는 2015. 4. 22.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2014. 12. 16.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접수 제12736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 중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란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같은 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2012. 3. 29.	265,625,000	2013. 3. 29.(2015. 3. 27.로 조건변경하여 연장)	312,500,000	피고 B, C
2	2012. 3. 29.	85,000,000	2013. 3. 29.(2015. 3. 27.로 조건변경하여 연장)	100,000,000	
3	2012. 4. 10.	637,500,000	2013. 4. 10.(2015. 4. 10.로 조건변경하여 연장)	750,000,000	
합계	988,125,000		1,162,500,000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B, C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추가보증료(주채무자가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A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 A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가.항에 적힌 표 중 '대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으나, 2015. 1. 13. 보증사고(이자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000,389,4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1	2015. 4. 22.	265,625,000	3,338,207	1,000,389,428
2	2015. 4. 22.	85,000,000	1,173,523	
3	2015. 4. 22.	637,500,000	7,752,698	
합계(원)	988,125,000	12,264,428		

3)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3,810,030원을 지출하여 같은 금액이 대지급금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추가보증료 합계 758,870원{10원 이하 버림, 순번1) 1 보증채무 추가보증료 327,480원($265,625,000\text{원} \times 1.8 \div 100 \times 25 \div 365$) + 순번 2 보증채무 추가보증료 104,790원($85,000,000\text{원} \times 1.8 \div 100 \times 25 \div 365$) + 순번 3 보증채무 추가보증료 326,600원($637,500,000\text{원} \times 1.7 \div 100 \times 11 \div 365$)}이 남아있다.

다.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C은 2014. 12. 16. 피고 D와 사이에, 대여금 200,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접수 제12736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A,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한 구상금과 법적 절차비용, 추가보증료 합계 1,004,958,328원(=대위변제금 1,000,389,428원 + 대지급금 3,810,030원 + 추가보증료 758,87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000,389,42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4.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연대보증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3)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4. 7.경부터 이미 카드대금, 대출금 등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1개월여 전인 2014. 10. 11.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2,2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주채무자인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이자연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실제로 원고가 2015. 4.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은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C의 적극재산의 가액

(1) 인천 연수구 E 제106동 제43층 제4304호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고 C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

(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2016. 1. 1. 당시 시가가 5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도 같은 것으로 추인된다.

(나) 다른 한편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C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A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당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이 위 아파트의 시가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4,836,55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4. 30. 기준 624,425,280원(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시가 261,078,000원 +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시가 363,347,28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도 같은 것으로 추인된다.

(나) 다른 한편 갑 제8, 11, 1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산시 상록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금액의 합계는 419,588,730원(①+②+③)이다.

① 삼척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 280,000,000원

② 각 소액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있는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의해 담보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 합계 138,000,000원

1	F	(14. 3. 28.)	14. 3. 28.	30,000,000	30,000,000	갑 18-1
2	G	(14. 3. 19.)		30,000,000	20,000,000	갑 18-3
3	H	(14. 12. 15.)	15. 5. 4.	3,000,000	3,000,000	갑 18-4

1	F	(14. 3. 28.)	14. 3. 28.	30,000,000	30,000,000	갑 18-1
4	I	(11. 09. 23.)		5,000,000	5,000,000	갑 18-5
5	J	(13. 10. 30.)		5,000,000	5,000,000	갑 18-6
6	K	(12. 10. 31.)		20,000,000	20,000,000	갑 18-7
7	L	13. 11. 7.(15. 4. 9.)	15. 4. 9.	20,000,000	20,000,000	갑 18-9
8	M	(14. 4. 28.)	14. 4. 28.	30,000,000	30,000,000	갑 18-12
9	N	11. 5. 1.(11. 5. 2.)	15. 6. 19.	5,000,000	5,000,000	갑 18-13
합계액(원)	138,000,000					

③ 안산시 상록구청의 과세채권액 합계 1,588,730원(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재산세 2014년 7월분 1,274,260원 +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재산세 2014년 7월분 314,470원)

(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우선변제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204,836,550원{(7)-(나)}이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C의 소극재산의 가액

(1)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채무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존재하고, 채무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15. 4. 22.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발생한 이상 위 연대보증금 채무도 피고 C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그 밖에 원고는 피고 C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채무가 발생하였다거나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액은 1,004,958,328원이다.

라) 소결론

(1)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당시 피고 C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204,836,550원이고, 소극재산의 가액은 1,004,958,328원으로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따라서 피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아래와 같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1) 피고 C이나 D는 피고 A에 관한 경영권이 피고 B 넘어간 이후인 2014. 3. 31., 2013. 11. 8. 각각 이사, 감사의 지위에서 물러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 A의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던 2012년과 2013년 당시 피고 A는 자본총계가 각 38억 원, 21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3) 피고 D는 2014. 1. 13., 같은 달 14. 피고 C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4. 4. 7.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 후 2014. 9. 22., 2014. 10. 20. 합계 50,000,000원만을 변제받고, 피고 C에게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독촉하던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종전에 말소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받은 것이다.

나) 을 제15호증의 기재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앞서 본 피고 D의 사해의사의 추정을 뒤집고 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피고 A가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의 발생이 임박하였음을 인식하고 피고 C에게 상당함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 D는 2013. 11. 7.까지 피고 A의 감사로 근무하며 피고 A와 중소기업 사이의 1,162,500,000원 대출계약, 피고 A와 주식회사 하나은행 사이의 2,200,000,000원 대출계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등 피고 A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고 A는 2014. 7.경부터 이미 카드대금, 대출금 등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4. 9. 12.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2,2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2014. 11. 6. 피고 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게 자기 소유인 인천 연수구 E 제106동 제43층 제43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는 피고 C과 남매 관계이고, 2014. 11. 14.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누구보다 피고 C이 처한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D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1. 14.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접수 제12736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

판사이진용

판사한상술

별지